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6 선고 2022가단525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사이에 2021. 8.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8. 27. 접수 제371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과 E은 부부로서 2020. 6. 8.경부터 충주시 G에서 E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F/E 부부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2020. 12. 4. 13:10경 화물용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제1, 제2 요추 골절, 양측 발의 분쇄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며(이하 '이 사건 산재'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다. 이 사건 산재와 관련하여 F은 2021. 12. 1. 29.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충주지원 2021고단627호), 원고가 2022. 2. 14. F/E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000만원(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 확장 예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F/E 부부는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200만원으로 전차하여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기손손실이 발생하는 적자운영을 하다가, 이 사건 산재가 발생하자 더 이상의 운영을 포기하고 2021. 3. 10.경 식자재마트를 폐업하였다.

라. F/E 부부는 충주시 I 대 168.9㎡(공시가격 58,692,750원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64.53㎡(공시가격 61,400,000원)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충주시 C아파트 D호(공시가격 104,000,000원)을 E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산재로 인하여 F이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F/E 부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만간 자신들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친언니인 피고에게 2021. 8.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충주지원 2021. 8. 27. 접수 제3710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F/E 부부에게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외에도, F 명의로 9,000만원 가량, E 명의로 9,500만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 법원행정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자재마트의 적자운영으로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산재가 발생하여 F/E 부부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된 상황에서, 채무자 E이 자신이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친연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식자재마트는 F이 단독 운영하였고 E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산재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F에게만 있어, 피고가 E의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E이 2020. 6. 18.경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E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F과 E이 부부이므로, E이 F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면, 소송지연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20. 6. 18.경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계약서나 금융자료를 전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대여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2020. 6. 18.경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점이 F/E 부부가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의 개업일 무렵이므로 피고의 대여금은 식자재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이 차용한 돈이 식자재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피고가 식자재마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더욱 타당하지 않게 된다. 설령 E이 식자재마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그 배우자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 사이의 내부적 역할 분담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E은 명의대여자로서 식자재마트의 영업 관련 채무에 관하여 F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24조).

(3) 만일 피고가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해 E으로부터 가등기를 설정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에 근거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가 E에 대하여 대여금 5,000만원 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E의 친연니로서 이 사건 산재로 인하여 F/E 부부가 식자재마트를 폐업하고 F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E에게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한 것이라고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